

직제 규정

(제18차 개정 2022. 8.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본부 사무총국과 중앙훈련원 및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장의 기구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 (개정 09. 11. 13.)

제2조(적용 범위) 본 연맹의 직제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사무총국

제3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고 그 선임과 직무는 정관과 헌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83. 9. 9)

제5조(기구) ① 사무총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직, 훈육, 연구, 홍보, 국제, 성인자원양성, 기획, 인사·총무, 회계, IT, 여행사업 부문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둔다. (개정 19. 2. 13.)

제6조(정원) 제5조(기구)에 의한 중앙본부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문별 인원은 업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총재의 승인을 득한 후 유기적으로 변동한다. (개정 19. 2. 13.)

중앙본부 정원표 (개정 22. 8. 23.)

구 분			정원	
사무총국	사무총장		1명	
	본부장, 팀장		약간명	
	주요직무	조직	성인자원양성 (훈련원)	36명
		훈육	기획	
		연구	인사총무	
		홍보	회계	
		국제	IT	
		여행사업	-	
중앙훈련원	원장	1명		
계			39명 이내	

제7조(부문별 업무 분장) ① 각 부문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09. 2. 13.)

1. 조직 부문

- 가. 조직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나. 지방·특수연맹 지도·관리·협력 업무 (개정 09. 11. 13.)
- 다. 조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라. 평생회원 관리 업무
- 마. 스카우트 포상 및 대외 포상에 관한 업무
- 바. 장학스카우트 선발 관리 업무

2. 훈육 부문

- 가. 진보제도 관리
- 나. 훈육활동 증진에 관한 업무
- 다. 대활동 활성화에 관한 업무
- 라. 전국 및 지방 훈육지도자 회의에 관한 업무
- 마. 중앙커미셔너 운영
- 바. 훈육행사(잼버리 등), 지방 및 지구단위 훈육행사 지원 등 훈육행사에 관한 업무

3. 연구 부문

- 가. 도서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
- 나. 프로그램 개발·연구 업무
- 다. 의식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
- 라. 지정연구단 운영 업무
- 마. 제복·장구·수품에 관한 업무
- 바. 자료실 관리 및 운영
- 사. 보존기념품 관리
- 아. 역사 편찬에 관한 업무

4. 홍보 부문

- 가. 연간 홍보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 나. 언론매체 관리 업무
- 다. 각종 홍보물 제작에 관한 업무
- 라. 대외 전시활동 업무
- 마. 상표·SI관리 및 진흥 업무
- 바. 정기간행물 발간과 공급 확대에 관한 업무

사. 훈육도서 발간과 공급 확대에 관한 업무

아. 단행본 발간과 보급에 관한 업무

5. 국제 부문

가. 국제교류 사업(파견·초청)업무

나. 국제행사에 관한 업무(잼버리 등)

다. 세계연맹 및 아·태 연맹에 관한 업무

라. 회원국과의 교류 증진에 관한 업무

마.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교류 업무

바. 지방·특수연맹 간 국제 교류 행사 진흥 업무 (개정 09. 11. 13.)

6. 기획 부문

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업무

나. 사업계획 수립·분석 업무

다. 지방·특수연맹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개정 09. 11. 13.)

라. 예산수립 관한 업무

마. 제 규정 제·개정 및 관리 업무

바.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업무

사. 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아. 외부 시설 위·수탁 업무

7. 인사·총무 부문

가. 법인에 관한 업무

나. 인장관리

다. 관재업무(재산관리·재물조사 등)

라. 소송업무(인사·재산 등)

마. 문서 수발·통제·보관에 관한 업무

바.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업무

사.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아. 인사 및 노무, 노사 관련 업무

자. 팀별 업무 조정 업무

차. 직원 평가 및 계약(연봉) 업무

카. 직원 복무 및 복지에 관한 업무

타. 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파. 회관 관리 및 임대 업무

하. 위·수탁 수련시설 관리 업무

8. 회계 부문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관리
- 나.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
- 다. 세무업무
- 라. 재정 모금에 관한 업무
- 마. 지방·특수연맹 회계 업무지도 및 관리 (개정 09. 11. 13.)

9. IT 부문

- 가.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 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리

10. 여행사업 부문

- 가. 국내·외 여행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업무
- 나. 법인 여행사업 기획 및 영업업무

제7조 2(부문별 업무분장 조정) 중앙본부의 부문별 업무분장은 총재의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 운영하거나 타 부문으로 이관할 수 있다. (개정 19. 2. 13.)

제8조 (삭제 99. 12. 17)

제9조(근지암야영장) (삭제 09. 2. 12.)

제10조 (삭제 93. 2. 26)

제3장 중앙훈련원

제10조 1(원장)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은 훈련교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원지도자로서 전국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 3. 14.)

제10조 2(기구) (삭제 09. 2. 12.)

제10조 3(정원) (삭제 09. 2. 12.)

제10조 4(교수실) (삭제 09. 2. 12.)

제10조 5(성인자원연수 부문) ① 성인자원연수 부문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 2. 12.)

- 1. 훈련부문

- 가. 훈련정책의 수립과 추진 업무
- 나. 지도자 훈련과 이수자 관리 업무
- 다. 지방 훈련 지원 업무

2. (삭제 19. 2. 13.)

3. 기타 각종 소관 회의, 협의회, 위원회 운영

제4장 지방·특수연맹 사무처 (개정 09. 11. 13.)

제11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99. 12. 17)

② (삭제 99. 12. 17)

제12조(기구)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에 조직, 훈육 및 총무부서를 둔다. (개정 09. 11. 13.)

제12조 2(정원) 전 제12조(기구)에 의한 각 지방·특수연맹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09. 11. 13.)

제13조(조직부서) 조직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 12. 17)

- 1. 등록 통계 업무
- 2. 지구연합회 조직 관리 업무
- 3. 포상 업무
- 4. 홍보 및 국제 업무

제14조(훈육부서) 훈육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 12. 17)

- 1. 훈련 및 훈육지도 업무
- 2. 프로그램 연구·개발 업무

제15조(총무부서) 총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 12. 17)

- 1. 서무 및 인사 업무
- 2. 예산 및 결산 업무
- 3. 재산관리 업무
- 4. 회계 업무
- 5. 계약 및 발주 업무
- 6. 수품 보급 및 지도 업무

제16조(적용) 지방·특수연맹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2개 부서를 둘 경우는 훈육부

(직제 규정)

와 총무부를 두고 훈육부는 제14조와 제13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분장하며 총무부는 제15조와 제13조 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09. 11. 13.)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히 임명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하위 직책에서 기히 임명된 상위직급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이 규정은 1983년 9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3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8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